

1. 개정이유

「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」에 신규 훈련시설을 반영하고, 행정용어가 중복되는 혼선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증대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실화재훈련 회복실, 디브리핑장, 감염관리실 등 5개 신설
- 나. 교육훈련장 사용 승인에 중복문구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규정은"을 "훈령은"으로, "훈련장의 운영과 이용"을 "훈련장 운영과 사용"으로, "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"를 "규정함에 목적이 있다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(이하 "교직원"이라 한다),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(이하 "교육생"이라 한다),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훈련장(이하 "훈련장"이라 한다)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훈련장은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.

제3조 단서 중 "필요한 경우 유관기관"을 "유관 기관"으로, "운영할 수 있다"를 "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"환경에서의"를 "환경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소방관련"을 "소방 관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밖의"를 "밖에"로 한다.

제5조 중 "감안하여"를 "고려하여"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다.

제7조 중 "운영위원회"를 "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회"를 "운영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훈련시설의"를 "훈련장 내 시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규정"을 "훈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운영계획"을 "교육훈련 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다음"을 "훈령장 관리 등 다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밖의"를 "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"한다"를 "개최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인정할"을 "인정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"을 "위원장"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"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"를 "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훈련장은 시뮬레이션훈련장, 실물화재훈련장, 인명구조훈련장, 실내종합훈련장, 구급교육훈련장, 드론훈련장, 화재조사훈련장으로 구분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"를 "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"시뮬레이션 훈련장"을 각각 "시뮬레이션훈련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물화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"를 "다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실화재훈련 회복실

7. 디브리핑실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"를 "다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"를 "다음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실내체육관 : 지상1층"을 "실내체육관: 지상 1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실내훈련장 : 지상2층, 3층, 4층에"를 "실내훈련장: 지상 2층부터 4층까지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응급구조훈련장"을 "구급교육훈련장"으로, "구급교육센터"를 "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수난구조훈련장: 수영폴, 잠수폴

⑦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.

⑧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(폭발)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을 말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은 과정별 교육운영에"를 "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생은 일과 후"를 "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가 목 단서 중 "잠수폴장"을 "잠수폴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사용대상자"를 "사용자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나목(종전의 가목)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교직원

나. 교육생

다.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

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용신청 및 관리: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,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(이하 "사용신청서"라 한다)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,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제2호나목"을 "제2호가목"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"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희망일"을 "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"로, "제출"을 "교육훈련과에 제출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"17:00~20:00"을 "17시부터 20시까지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오전 06:00 ~ 22:00"을 "06시부터 22시까지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밖의"를 "밖에"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"승인 받"을 "승인받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"행위를 할 때"를 각각 "행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할"을 "될"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음주자"를 "음주자 등"으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사용료)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「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」을 적용한다.

제16조 중 "외부단체"를 "외부단체 등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총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"를 "총괄 감독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이용자의"를 "사용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등의"를 "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모든 업무"를 "업무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훈련과의"를 "교육훈련과"로 한다.

제18조 단서 중 "다만,"을 "다만, 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"로, "자에 한하여 관련부서"를 "자는 관련 부서"로 한다.

제19조 중 "훈련장의"를 "훈련장"으로 한다.

제20조 중 "비치하고"를 "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진행할 경우 훈련장별"을 "진행하는 경우 훈련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교육과정별 담당 교수요원(교관)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21조제2항(종전의 제3항)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"실물화재훈련장 :"을 "인명구조훈련장: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"인명구조훈련장 :"을 "실물화재훈련장: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"잠수폴 :"을 "잠수폴: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"수영장 :"을 "수영폴:"로 한다.

제22조 중 "발생했을"을 "발생한"으로, "취하고"를 "하고"로 한다.

제23조 앞에 "제6장 보 칙"을 삭제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<u>규정은</u>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<u>훈련장의 운영과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</u> 을 <u>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 <u>훈령은</u> ----- ----- <u>훈련장 운영과 사용</u> ----- -- <u>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</u>
제2조(적용범위) 이 <u>규정은</u> 중앙소방학교 <u>훈련장(이하 “훈련장”이라고 한다)의 관리자, 이용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에게 적용한다.</u>	제2조(적용범위) 이 <u>훈령은</u>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,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교육생(이하 “교육생”이라 한다),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<u>훈련장(이하 “훈련장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</u>
제3조(기본운영) <u>훈련장은</u>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훈련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<u>운영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합동 연구,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3조(기본운영) <u>훈련장은</u>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<u>운영한다.</u> ----- ----- <u>유관 기관</u>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.</u>
제4조(교육내용) <u>훈련장의 주요 교육내용은</u>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<u>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</u>	제4조(교육내용) ----- -----,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환경에서</u> ---

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현업 적응력 배양교육	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<u>소방관련</u> 교육기관, 민간단체 등이 요청한 교육·훈련	4. <u>소방 관련</u> ----- -----
5. 그 <u>밖의</u> 중앙소방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· 훈련	5. -- <u>밖에</u> ----- ----- --
제5조(조직) 교육훈련과장은 훈련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<u>감안하여</u> 적정 담당교수요원(교 관)을 배치하고, 훈련장별 교육 운영·장비 및 시설 관리를 위 하여 담당교수요원(교관)을 지 정하여야 한다.	제5조(조직) ----- ----- <u>고려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운영) ① (생 략) ② 그 <u>밖의</u> 훈련장 관련사무는 <u>교육훈련과의 사무분장에 따른 다.</u>	제6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 은 <u>교육훈련과 사무분장에 따른 다.</u>
제7조(설치) 훈련장 운영 기본방 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중앙소방학교에 <u>운영위원회</u> 를 둔다.	제7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운영위원회</u>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--- -----.
제8조(구성) ① <u>위원장은 교육훈 련과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</u>	제8조(구성) ① <u>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</u>

훈련계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훈련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
2.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다음 연도 예산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중요사항

제10조(회의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한다.
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.
3.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

원 중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최상위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가 부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교육훈련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9조(기능) 운영위원회-----
-----.

1. 훈련장 내 시설 -----
--
2. -- 훈령-----
3. 교육훈련 계획-----

4. 훈령장 관리 등 다음 ----
5. -- 밖에 훈련장 사용에 필요한 -----

제10조(회의) -----
-----.

1. -----
-- 개최한다.
2. -----
-- 인정하는 -----
--.
3. 위원장-----

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
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
대행한다.

제4장 훈련장의 이용 및 관리

제11조(훈련장의 구분) ① 훈련장
은 시뮬레이션 훈련, 실물화재
훈련, 인명구조훈련, 응급구조
훈련 및 실내종합훈련시설로 구
분한다.

②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시뮬레
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
련장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장
2. 통합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장
3. 상황관리 시뮬레이션 훈련장
4. 특수차량조작 시뮬레이션 훈
련장

5.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훈련장

③ 실물화재훈련장은 실물화재
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
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제4장 훈련장의 사용 및 관리

제11조(훈련장의 구분) ① 훈련장
은 시뮬레이션훈련장, 실물화재
훈련장, 인명구조훈련장, 실내
종합훈련장, 구급교육훈련장,
드론훈련장, 화재조사훈련장으
로 구분한다.

② 시뮬레이션훈련장은 다음 -

-----.

1. ----- 시뮬레이션훈련장
2. ----- 시뮬레이션훈련장
3. ----- 시뮬레이션훈련장
4. ----- 시뮬레이션훈련
장

5. ----- 시뮬레이션훈련장

③ ----- 다음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실화재훈련 회복실

7. 디브리핑실

④ 인명구조훈련장은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⑤ 실내종합훈련장은 실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실내체육관 : 지상1층에 위치한 운동시설

2. 실내훈련장 : 지상2층, 3층, 4층에 위치한 맨홀구조, 수평구조, 수직구조, 암벽구조, 로프하강 등반, 모형헬기 훈련시설 등

3. 수난구조훈련장 : 수영풀(25m×8m, 수심 1.5m), 잠수풀(25m×15m, 수심 5m~10m)

⑥ 응급구조훈련장은 구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구급교육센터를 말한다.

<신설>

<신설>

④ ----- 다음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다음 -----

-----.

1. 실내체육관: 지상 1층-----

2. 실내훈련장: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-----

--

3. 수난구조훈련장: 수영풀, 잠수풀

⑥ 구급교육훈련장-----
----- 구급교육센터와 감염관리실 -----
--.

⑦ 드론훈련장은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비행장과 배터리 충전실을 말한다.

⑧ 화재조사훈련장은 화재(폭발)조사실습실과 위험물실습실

제12조(사용기준)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은 과정별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모든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교육생은 일과 후 자기 주도 학습, 체육활동, 동아리활동(자기개발) 등에 필요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용범위

가. 수난구조훈련장. 다만, 잠수풀장은 교육운영 및 허가된 사항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(생략)

2. 사용대상자

<신설>

가. 과정별 교육생

나.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보조인력

다. 그 밖의 교육훈련과장의 사용 허가를 얻은 자

3. 사용신청 및 관리 : 중앙소방

을 말한다.

제12조(사용기준)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에서 -----

②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-----

1. -----

가. ----- . ----- 잠수풀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2. 사용자

가.

나.

<삭제>

다. 그 밖에 교육훈련과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

3. 사용신청 및 관리: 중앙소방

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체육활동,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,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.

가.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
는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
과에 제출하고, 교육훈련
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
다.

나.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
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까
지 사용신청서를 교육훈련
과에 제출하고 교육훈련과
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.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
로서 사용대상자로 결정된
자는 사용희망일 3일 전까
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
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얻

학교 교육과정 외 체육활동, 동아리활동 등을 위하여 수난구조훈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(이하 “사용신청서”라 한다)를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고, 훈련장 입장 시 별지 제2호서식에 개별 기록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나. 제2호가목-----

-----.

다.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
하는 자는 훈련장 사용일

----- 교육훈련
과에 제출-----

어야 한다. 4. 사용시간 가. 수난구조훈련장은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<u>17:00~20:00</u>로 한다. 나. 실내체육관은 <u>오전 06:00 ~ 22:00</u>로 한다. 다. 그 <u>밖</u>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 ③ (생략) 제13조(준수사항) 훈련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<u>승인</u> 받은 목적 이외 사용금지 2. ~ 5. (생략) 제14조(사용의 제한)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<u>행</u>	-----. 4.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<u>17시</u> <u>부터 20시까지</u>----- -----. 나. ----- <u>06시부터 22시</u>까지-----. 다. -- <u>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준수사항) ----- ----- -----. 1. <u>승인</u>받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사용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행</u>
--	--

<u>위를 할 때</u> 2.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<u>행위</u>를 할 때 3.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4. 5. (생략) 6. 그 밖의 전염성 질환자 및 <u>음주자</u> 제15조(사용료) 훈련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. 다만, 일부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제16조(보험가입) <u>외부단체</u> 수탁 교육 시 교육생은 개인, 또는 단체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 제17조(관리책임) ① 교육훈련과장은 훈련장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<u>총괄하여 감독</u>하여야 한다. ② 각 훈련장별 담당교수요원(교관)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훈련장 <u>이용자의</u> 안전관리	<u>위</u> 2. ----- ----- <u>행위</u> 3. ----- ----- <u>될</u> -- 4.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음주자 등</u> 제15조(사용료) 훈련장 사용료 징수는 「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」을 적용한다. 제16조(보험가입) <u>외부단체 등</u> ----- ----- -----. 제17조(관리책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총괄 감독한다.</u>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 <u>사용자</u> -----
---	--

5. 시설물 사용신청서, 이용대장 <u>등의 기록유지</u>	5. ----- <u>등</u> -----
6. 그 밖의 훈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<u>모든 업무</u>	6. ----- ----- <u>업무</u>
③ 이 외의 훈련장 관리책임은 <u>교육훈련과의 사무분장에 따른</u> 다.	③ ----- <u>교육훈련과</u> ----- --.
제18조(출입제한) 교직원 및 교육 생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훈 련장에 출입할 수 없다. <u>다만,</u>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<u>자에 한</u> <u>하여</u> <u>관련부서의 안내를 받아</u> 출입할 수 있다.	제18조(출입제한) ----- ----- ----- <u>다만,</u> <u>교육훈련과장의 승인을 받아</u> - ----- <u>자는 관</u> <u>련 부서</u> -----.
제19조(변상) <u>훈련장의</u>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하거나 훈련기자재를 분실한 자는 원상 복구에 필요한 전액을 배상하여 야 한다.	제19조(변상) <u>훈련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안전교육) 훈련장에는 훈 련장 안전수칙을 <u>비치하고</u> , 교 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(교관)은 교육 전 모든 교육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20조(안전교육) ----- ----- <u>잘 보이는 곳에</u> <u>비치하고</u> ----- ----- -----.
제21조(안전요원의 배치) ① 교육 훈련과장은 훈련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<u>훈련장별</u> 특성을	제21조(안전요원의 배치) ① ----- ----- <u>진행하는 경우 훈련장</u> -----

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요원의 기준은 훈련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생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(교관)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실물화재훈련장 : 교육훈련시 담당교수요원(교관)

2. 인명구조훈련장 : 교육훈련시 담당교수요원(교관)

3. 수난구조훈련장

가. 잠수풀 : 수중 내 교육생 5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

나. 수영장 : 수영 등 수상에서 교육생 10명마다 안전관리요원 1명. 다만, 교육훈련 외 사용 시 안전관리요원 1명

제22조(안전사고) 훈련장에서 교육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과정 담당교수요원(교

-----.

<삭 제>

②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교육과정별 담당교수요원(교관)은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2. 인명구조훈련장: -----
--

1. 실물화재훈련장: -----
--

3. -----

가. 잠수풀: -----

나. 수영풀: -----

-----.

제22조(안전사고) -----
----- 발생한 -----

관) 또는 훈련장 담당교수요원 (교관)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<u>취하고</u>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<u>제6장 보 칙</u> 제23조(운영세칙) <u>이 규정에 규정</u> <u>한 사항 외에 훈련장 운영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</u> <u>를 거쳐 정한다.</u>	----- ----- <u>하고</u>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제23조(운영세칙) <u><삭 제></u>
--	--